2015년도 제24차

금융통화위원회(임시) 의사록

한 국 은 행

- 1. 일 자 2015년 12월 16일(수)
-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 3. 출석위원 이 주 열 의 장(총재)

하성근 위원

정 해 방 위 원

정 순 원 위 원

문 우 식 위 원

함 준 호 위 원

장 병 화 위 원(부총재)

- 4. 결석위원 없 음
- 5. 참 여 자 하 성 감 사 허 재 성 부총재보

서 영 경 부총재보 이 흥 모 부총재보

김 민 호 부총재보 윤 면 식 부총재보

채 선 병 외자운용원장 최 운 규 경제연구원장

장 민 조사국장 조정 환 금융안정국장

허 진 호 통화정책국장 신 호 순 금융시장국장

홍 승 제 국제국장 이 환 석 금융통화위원회실장

서 봉 국 공보관 박 철 원 의사팀장

- 6. 회의경과
- 가. 의결안건

<의안 제54호 -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12월)(안)>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96조 1항에 의거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12월)(안)을 의결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 및 보완·수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보고서 작성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먼저 가계, 기업, 은행·비은행 금융기관, 금융시장, 외환건전성, 금융시장 인프라 등 각 부문별로 안정상황을 평가하였으며, 각 부문의 특이동향에 대해서는 참고자료를 통해, 그리고 식별 가능한 잠재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금융안정 현안분석을 통해 보다 세부적으로 점검하였음.

이를 부문별로 보면 가계부문에서는 전세시장 구조변화가 가계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점검하였고, 아울러 우리나라 인구고령화가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가계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가계부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하였음. 이어 기업부문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부채 수준을 OECD 국가와 비교하고 기업 유동성 위험에 대해 스트레스 테스트(stress test)를 실시하였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적부진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의 현황과 증가배경을 살펴보고 잠재 리스크를 점검한 후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 부문에서는 중금리 가계신용대출 동향과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이 금융안정 및 거시경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한편, 증 권회사의 장외 파생상품거래 잠재 리스크도 점검하였음. 한편 외환건전성 부문에 서는 교역 및 자본거래 확대로 우리나라와 동조화 정도가 높아진 신흥시장국에서 경제불안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 외화조달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금융시장 인프라 부문에서는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추진상황에 대해 정리하였고, 부록에서는 통화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 운용체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음.

그 다음으로 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들은 가계 및 기업의 재무건전성이 저하되고 금융안정지수도 주의 단계에 근접하였음에도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양호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 고, 동 잠재위험 요인을 은행의 손실흡수력 차원에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을 제시하였음. 또한 일부 위원들은 은행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자산 증가세와 관련하여 성장성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의 안정성과 자금조달의 리스크 측면에서도 점검하여 필요시 위험요인에 대해 경고할 필요가 있고, ECB의 정책금리 인하 및 미 연준의 금리인상 기대 등 최근의 상황변화가 금융시장과 외환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보다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금융시스템 내 레버리지(leverage) 및 상호연계성 분석을 통해 종합적인 시각에서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일부 위원들은 금융안정 현안분석 관련하여 주제를 구체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분석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안정보고서의 정책 제언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보고서가 금융시스템 내 위험 요인을 적절히 분석하고 있으나 스트레스 테스트 등에서 리스크를 잘못 평가할 소지는 없는지 유의해야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이와 관련하여 일부 위원들은 금융안정보고서 현안분석 작성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방식의 일관성 유지 등 보고서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음.

이에 관련부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그결과를 위원들에게 설명하였으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언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집필시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한국은행법 제96조 제1항에 의거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것을 의결한다.

<붙임> 금융안정보고서(2015년 12월)(안)(생략)

<의안 제55호 -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

(1) 담당 부총재보가「한국은행법」제6조 제1항에 의거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물가 상승률 기준 2.0%로 설정하여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한다는 제안설명을 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제안설명에 이어 관련부서는 그동안 위원협의회 등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일부 위원들은 글로벌 수요 부진, 인구고령화, 소비행태 변화 등 대내외 경제 여건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물가안정목표를 설정하자는 견해를 밝혔음. 또 한 물가안정목표 수준이 현실화되는 경우 기대인플레이션 안정 및 대국민 커뮤니 케이션 측면을 감안하여 목표제시방식을 단일목표치로 변경하고 물가목표 이탈시 설명책임 발동요건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지난 3년간 실제 물가와 목표간 괴리가 지속되면서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새로 변경된 제도의 내용 및 취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 기대인플레이션을 안착시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일부 위원은 공급충격, 공공요금 등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물가지수 이외에 여타 물가지표를 목표대상 지표로 고려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다른 일부 위원은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주 요 물가안정목표제 도입국과 마찬가지로 점검주기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어 본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다음과 같음.

일부 위원은 지난 물가안정목표제와 비교하여 설명 책임이 강화되었으며 목표수준이 하향 조정되었다는 특징이 있다고 평가하며,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framework)에 기반하여 대내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여야한다는 견해를 밝혔음. 또한 기대인플레이션이 물가목표를 상회하는 만큼 경제주체들이 직면하는 실질금리가 상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고 첨언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물가안정목표제에 대한 대중 및 유관기관의 인식이 부족한 만큼 이번에 새로 채택된 단일 물가목표치 제시 방식의 의미, 책임성 등에 대한 설명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실제로 사후적인 달성 책임보다는 중기적 시계에서 미래지향적으로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고자 하 는 중앙은행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통화정책 운용체계의 선진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또 다른 일부 위원은 물가안정목표 이탈시 설명책임이 공식적으로 명시된 것이 처음인지 물었으며.

이에 대해 담당 부총재보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한 설명책임은 기존에도 있었으나 추가 설명 책임은 이번에 처음 도입되었다고 답변하였음. 지금까지 총재가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물가상황과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설명했지만 향후 필요시에는 별도 보도자료를 통해 물가에 집중하여 통화신용정책 방향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고 첨언하였음.

(3)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

의결사항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붙임과 같이 설정한다. <붙임> 2016년 이후 중기 물가안정목표(생략)